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개정(2005. 1. 5)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(안 제2조 ~ 안 제4조, 안 제5조 ~ 안 제6조, 안 제8조 ~ 안 제9조, 안 제11조 ~ 안 제19조, 안 21조 ~ 안 제22조, 안 제24조 ~ 안 제25조, 안 제27조)
- 나.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에 의거 세율을 인하함(안 제20조)
- 다.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선물거래소 설립이 5년이 경과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7조, 제9조
- 나. 입법예고 : 2005. 3. 11 ~ 3. 31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개정(2005. 1. 5)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과
-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「지방세법」 제 188조에 의거 세율을 종전 “1,000분의 3”을 “1,000분의 1.5”로 낮추고(안 제20호)
-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감면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(안 제26조)하려는 것과
- 기타 시행상 불합리한 문구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가 없는 등 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.

2005. 4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